



법조야사 II

단파방송 청취사건

1942년에서 1943년 봄에 이르는 동안 총독부 방송국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이 비밀리에 단파방송을 도청하였다.

조선방송협회 기술부에 근무하던 성기석이 1942년 봄부터 은밀히 단파수신기를 조작해서 해외방송을 듣고 그 내용을 주변에 알리면서 발생하였다.

경성방송국(현 KBS 전신)의 한국인 직원들은 중국 중경의 임시정부에서 전달되는 '중경방송'과 '미국의 소리'(VOD: Voice of America)의 방송을 비밀리에 청취하고 이어 애국방송인들은 이를 사회지도층 인사들 송진우, 여운형, 허헌, 이인, 김병로 등 당시 정치지도자들과 법조

인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고, 이들은 이 정보를 통해 여운형의 건국준비를 위한 건국동맹을 조직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경성방송국에서만 아니어서, 편성원, 기술계 직원 등 약 40여 명이 체포되었고, 각 지방방송국까지 합치면 150명 가까운 한국인 방송인이 붙잡혀 갔다. 그리고 정객과 민간인으로 끌려간 150여 명을 합치면 3백여 명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수난을 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일제 경찰의 심한 고문을 당했다. 결국 그 중 일부가 보안법 위반, 치안유지법 위반, 육해공군 형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75명의 대략

을 기록에 의하면 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3명이며, 1년6개월 징역형은 4명, 1년 2개월 징역형은 2명, 1년 징역형이 16명, 8개월 금고형이 1명, 8개월 징역형이 2명, 6개월 징역형이 5명, 6개월 징역에 3년간 집행이 유예된 사람이 1명, 300엔 벌금형이 5명, 200엔 벌금형이 1명, 100엔 벌금형이 1명 및 형량미상인 사람이 34명으로 모두 75명에 달하는 터이다.

이보다 훨씬 많은 유죄판결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더 조사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옥고를 치른 방송인 등이 상당수였으며 심지어 옥사자까지 내게 되었다.

그 재판을 받은 대부분은 방송인이었고 일부 언론인도 있고 법조인으로서 허헌 변호사가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1931년 4월 25일 신간회 민중대회 사건(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옥살이하였으나 이번에 공산주의운동 계열의 독립운동가로서 이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었고 홍익범(동아일보 정치부기자)의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홍익범으로부터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관계, 임정과 장개석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허헌 변호사는 1943년 10월 단파방송 청취사건에 가장 무거운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중 1945년 4월에 병으로 출감했다.

이렇게 허헌 변호사는 독립운동가로서 일제의 탄압을 받았던 것이다.

허 변호사는 일제 때 창씨개명도 안하고 버티었다. / 김이조 변호사·서울회